

변경내용

1. 대상 투자신탁 :

| 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 |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대신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| 61295 |
| 수수료선취-오프라인(A) | 61629 |
| 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(C) | 61293 |
| 수수료미징구-온라인(Ce) | 75787 |

2. 주요변경내용

① 규약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② 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결산에 따른 수익률변동성 변경(19.33%→20.22%)
-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반영

③ 간이투자설명서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반영

3. 변경 대상 서류 : 규약,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4. 변경시행일 : 2022.11.10.(목)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| 항 목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 4 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 | ① <생략>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추가>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. ③ <생략> | ① < 현행과 동일 >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③ < 현행과 동일 > |
| 제 25 조(판매가격) | ① <생략>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 3 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 ① <현행과 동일> ②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 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|
| 제 26 조(환매업무) | --<이전 생략>---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 4 영업일</u> (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 4 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--<이하 생략>--- | --<이전 현행과 동일>--- ⑥ 본 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4 영업일</u> (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 영업일</u>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--<이하 현행과 동일>--- |
| 제 27 조(환매가격) |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 2 영업일</u> (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 3 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|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 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2 영업일</u> (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3 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5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|
| 제 30 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| ① 집합투자업자는 ----<중략>---- <u>대차대표</u>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| ① 집합투자업자는 ----<중략>---- <u>재무상태</u> 대표상에 계상된 계상된 투자신탁(당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<p>수익증권의 상당액)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</p> <p>②~③<생략 ></p> | <p>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.</p> <p>②~③< 현행과 동일 ></p> |
| <p>제 32 조(집합투자 기구의 회계감사)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 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대차대조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~2.<생략></p> |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 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재무상태표</u></p> <p>2. 손익계산서</p> <p>3.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64 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~2.< 현행과 동일 ></p> |
| <p>제 39 조(보수)</p> | <p>①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 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</p> <p>--<이하 생략>---</p> | <p>①< 현행과 동일 ></p> 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"보수 계산기간"이라 한다)은 매 6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 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</p> <p>--<이하 현행과 동일>---</p> |
| <p>제 45 조(집합투자 기구의 해지)</p> | <p>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<생략></p> <p>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</p> | <p>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<현행과 동일></p> <p>3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</p> |

| | | |
|---|---|--|
| | <p>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---<이하 생략>---</p> | <p>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설정한 후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---<이하 현행과 동일>---</p> |
| <p>제 45 조의 2(집합투자기구의 소규모 해지)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</u>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<u>1년(법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|
| <p>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| <p>① <생략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 ~ 5. <생략></p> <p>③~⑥ <생략>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</p> | <p>① < 현행과 동일 >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< 현행과 동일 >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5.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~⑥ <현행과 동일></p> <p>⑦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투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<p>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<u>모사전송</u>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<생략></p> <p>⑧~⑩<생략></p> | <p>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<u>팩스</u>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 <현행과 동일></p> <p>⑧~⑩<현행과 동일></p> |
| 제 51 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|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계약</u>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 | <p>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 |
| 부칙 | <신설> | 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|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| 항 목 | 변경사유 | 변 경 전 | 변 경 후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| 10.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 10.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|
| 요약정보 | | | |
| 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 | 업데이트 | - | 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|
| - 투자자 유의사항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| ·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 ·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</u>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| - 주요투자위험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: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 | 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: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 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<p>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| <p>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(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|
| - 매입방법, 환매방법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 X 영업일 | X 영업일 |
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사항 | 업데이트 | - | 기준일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|
| 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| <삭제> |
| 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다. 기타 투자위험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<p>- 집합투자기구 해지 또는 해산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</p> | <p>- 집합투자기구 해지 또는 해산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</p> |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지될 수 있습니다. | 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|
| 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| 결산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성 변경 |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9.33% 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 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|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.22% 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 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|
| 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 X 영업일 | X 영업일 |
| 제 2 부. 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|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|
|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업데이트 및 주식문구보완 | - |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,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금액 및 내역 추가 |
| 제3부.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대차대조표 | 재무상태표 |
| | 업데이트 | - | 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|
|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대차대조표 | 재무상태표 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<p>다. 최근 2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</p> | <p>업데이트</p> | <p>-</p> | <p>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</p> |
| <p>제4부. 6. 채권평가 회사에관한사항</p> | <p>사명 변경</p> | <p>KIS 채권평가(주)</p> | <p>KIS 자산평가(주)</p> |
| <p>제 5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/p> |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임의해지 <생략>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모두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두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가 설정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</p> | <p>임의해지 < 현행과 동일 >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<u>1년</u>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모두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두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가 설정 후 <u>1년</u>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<u>1년</u>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</p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<p><u>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,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,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<u><이하생략></u></p> | <p>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.</p> <p><u><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폐지에 따른 삭제 ></u></p> |
| <p>제 5 부. 3. 가. (2)자산운용보고서</p> | <p>용어정정</p> | <p>-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1)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<u>모사전송</u>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<이하생략></p> | <p>-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(1)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전화·전신·<u>팩스</u>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<현행과동일></p> |
| <p>제 5 부. 3. 나. (2) 수시공시</p> | <p>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 | 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(asset.daishin.com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<생략>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신설)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</p> | <p>-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(asset.daishin.com)·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(www.kofia.or.kr)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</p> <p>1. <현행과동일>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7. <현행과 동일>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</p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|
| | | <p>로서 설정후 <u>1년</u>이 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~11.<생략></p> | <p>로서 설정후 <u>1년</u>(법 시행령 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<u>2년</u>)이 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<u>1년</u>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10.~11.<현행과 동일></p> |
| 제5부. 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| 업데이트 | - |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|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| 항 목 | 정정사유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, 단위:%) - 운용전문인력 | 업데이트 | - | 결산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|
| - 투자자 유의사항 |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반영 | <p>·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<u>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</u>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| <p>·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<u>1년</u>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 <u>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</u>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p> |
| - 주요투자위험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<p>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: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<u>50억원</u>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<u>1년</u>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<u>50억원</u>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| <p>집합투자기구해지위험: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,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<u>1년</u>(<u>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</u>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<u>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<u>50억원</u>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<u>1년</u>(<u>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</u>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<u>설정 및 설립 이후 2년</u>)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<u>50억원</u>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|
| - 매입방법, 환매방법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제 X 영업일 | X 영업일 |